

02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5년의 진화와 다음을 위한 설계

2025년¹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541개사가 모두 기한 내(6월 2일) 의무공시²를 완료했다. 작년과 동일한 조건의 의무공시 대상은 일 년 새 15개사가 증가하였다.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 849개사³ 중 64%에 해당한다.

자율공시		의무공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자율공시		자산 2조 원 이상		자산 1조 원 이상		자산 5천억 원 이상		전체			
최초도입											

*연결기준, 코스피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19년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된 이래,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2024년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바람직한 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지표 15개의 준수 여부로 구성된 표이다. 의무공시 7년 차에 접어든 2025년 보고서에는 2024년 6월과 2025년 2월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5, 6차 개정본)이 반영되었는데,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관련 사항 공시,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대상에 분기배당 포함, 이사회 구성원 성별 다양성 확보 여부 표기 관련 설명 추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작년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4차 개정본) 대비 달라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여 주목할 변화와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서, 본고는 분석을 위해 2024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확인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보고서에 첨부되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작성 기준시점을 보고서 제출일 현재로 정하고 있다.

2 그 외에 8개사가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3 보고서 발간 시점 기준

연도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현황(의무공시 기준)

구분	자율공시		의무공시(자산총액 기준)							
			2조 원 이상			1조 원 이상		5천억 원 이상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금융회사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39	40	39	40	40	41	39	38	40	
금융회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5
비금융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31	55	161	171	175	304	327	488	496	
전체	70	95	200	211	215	345	366	526	54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등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공시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체하는 금융회사

출처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549개 상장기업,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완료', 2025.06.04.

주) 출처 자료는 금융회사와 관련하여,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갈음한 금융회사의 수(40개사)만 별도 집계하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 501개사를 비금융사로 통칭하여 구분하고 있음. 2025년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인 금융회사 중 5개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에 관한 주요 현황 및 활동 내역을 공시하였음을 확인하여, 본고의 분석 대상 확인 목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들을 분류하여 집계함.

본고의 분석 대상은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기업 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496개사)으로, 구체적으로는 연결기준 자산총액 규모별로 2조 원 이상 225개사,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123개사, 1조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 148개사이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갈음하여 작성하는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 핵심지표 준수 현황이 포함되지 않는 점과,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사업적·제도적 특성 차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What's new?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5, 6차 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2019년 최초 제정 이후 국내외 지배구조 관련 법제 환경 변화와 시장 참여자의 요구 및 기업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올해 공시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작년의 4차 개정본 대비 2024년 6월의 5차 개정과 2025년 2월의 6차 개정 내용이 반영되었다. 5차 개정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공시와 이사회 구성원 성별 다양성 확보 여부 표기 관련 설명 추가, 6차 개정은 분기 배당의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대상 포함이 주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부원칙

구분	개정사항	세부원칙	시행일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	현금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관련, 분기배당도 대상에 포함(자본시장법의 분기배당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반영)	1-4	'25.02.10
이사회의 다양성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이 아닌지 여부' 란에 성별 다양성이 확보된 경우 O, 모두 같은 성인 경우 X 표기하도록 설명 추가	4-2	'24.0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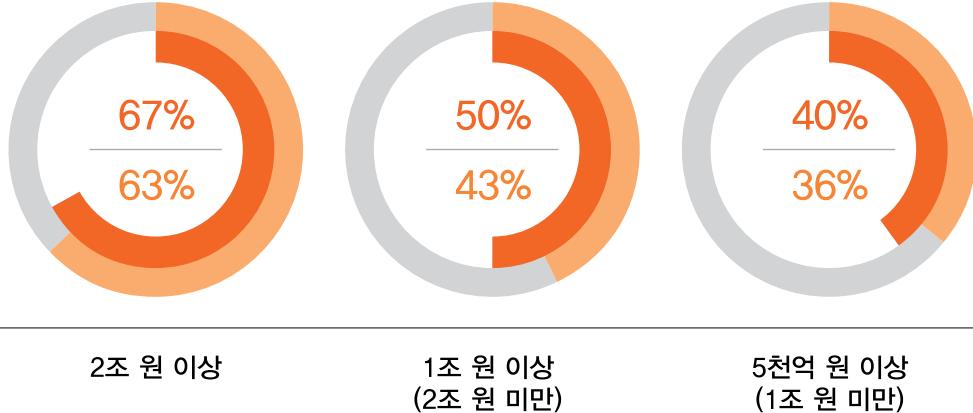
기타사항

신설	시행일
<p>'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여부 •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 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 진행 여부 등)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논의 방식 및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거나 논의 결과 도출된 주요 의견 등)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한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여부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 일자, 소통 대상, 소통 채널 및 주요 소통 내용 포함 » 소통 시 임원(미등기 포함) 참여 여부 포함 	'24.06.05

Summary

① 자산 규모별 평균 준수율(2024년 전체 평균: 50% / 2025년 전체 평균: 55%)

■ 2025년
■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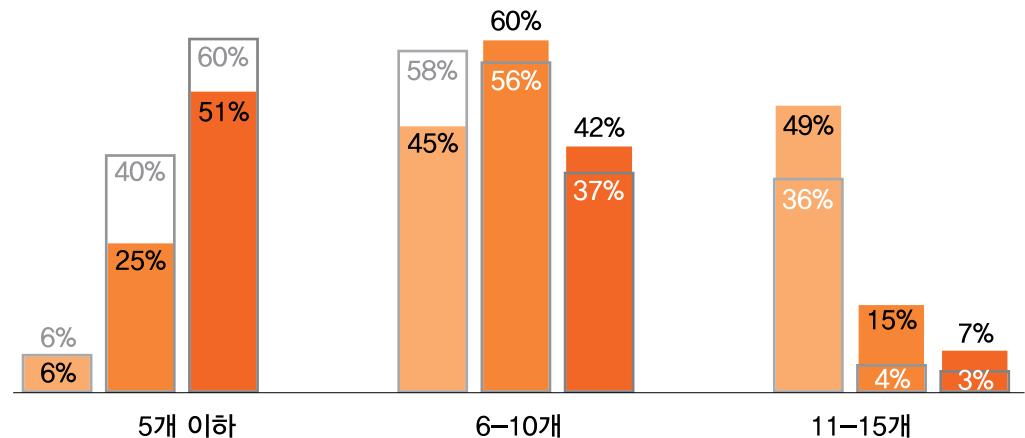


- 전년 대비 전체 및 각 자산 규모별 평균 준수율 모두 상승
- 연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과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기업 간 준수율 차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27%)으로, 자산 규모별 격차가 상당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② 규모별 준수 현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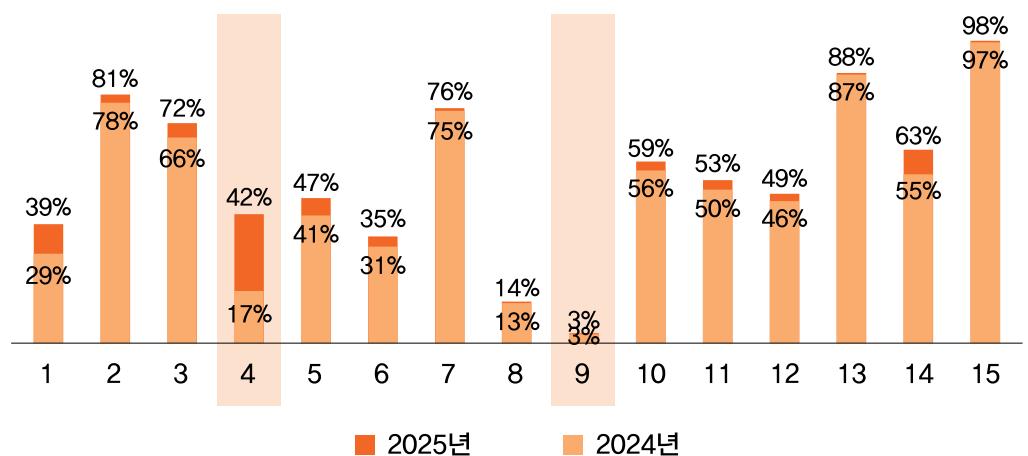
2025년
■ 2조 원 이상
■ 1조 원 이상
■ 5천억 원 이상

2024년
□ 2조 원 이상
□ 1조 원 이상
□ 5천억 원 이상



- 연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및 1조 원 이상(2조 원 미만) 기업 중 핵심지표 11개 이상 준수 기업 비율이 전년 대비 각 13%, 11% 포인트 가량 상승함 ▶ 지난 한 해 연결 자산 1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성과가 보다 뚜렷하게 확인됨

③ 핵심지표별 준수율 개선 현황



-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표: 준수율이 가장 낮은 지표 중 하나이던 ‘④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의 준수율이 전년 대비 큰 폭(25% 포인트) 상승함 ▶ 최근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됨
- 개선율이 가장 낮은 지표: ‘⑨집중투표제 채택’ 항목의 준수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저조한 수준(3%) ▶ 현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이 논의 중임

④ 핵심지표 준수율 순위 변동

2025년 순위	2024년 순위	핵심지표 항목	2025년 준수율	2024년 준수율	개선율 ('24vs'25)
1	1	⑯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8%	97%	1%
2	2	⑬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88%	87%	1%
3	3	②전자투표 실시	81%	78%	3%
4	4	⑦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76%	75%	1%
5	5	③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72%	66%	6%
6	7	⑭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63%	55%	8%
7	6	⑩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59%	56%	3%
8	8	⑪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53%	50%	3%
9	9	⑫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49%	46%	3%
10	10	⑤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47%	41%	6%
11	13	④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42%	17%	25%
12	12	①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39%	29%	10%
13	11	⑥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35%	31%	4%
14	14	⑧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14%	13%	1%
15	15	⑨집중투표제 채택	3%	3%	0%

- 순위 변동 후에도 준수율이 높은 지표 5개, 중간 지표 5개, 낮은 지표 5개 그룹의 구성을 작년과 동일함 ▶ 지표 준수율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함

⑤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큰 지표 순위 Top 5(2조 원 이상 vs. 2조 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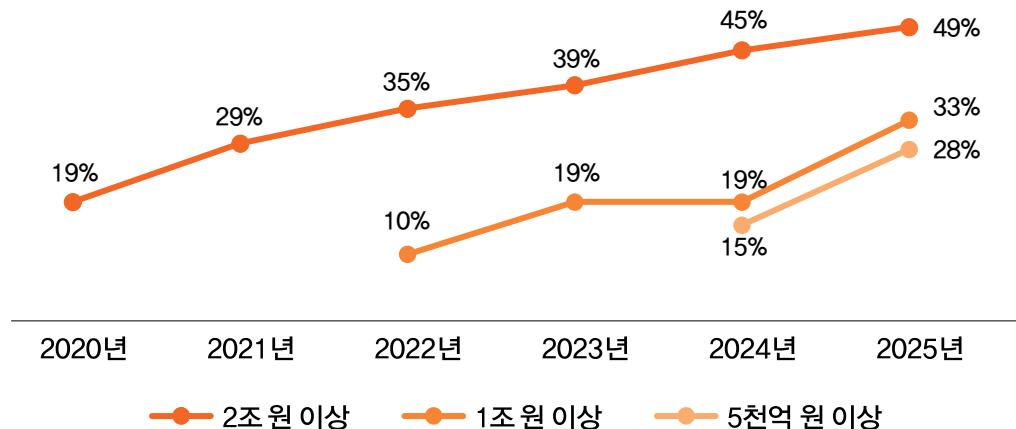
격차 순위	핵심지표 항목	2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차이
1	⑪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80%	30%	50%
2	⑭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84%	45%	39%
3	⑤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68%	30%	38%
4	⑥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52%	29%	33%
5	⑩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76%	45%	31%

- Top 5 항목 작년과 동일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의 규모별 차별화가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주

1. 주주총회⁴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규모별 추세



2조 원 이상 기업은 2021년부터 5% 안팎의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50% 달성을 앞둔 모습이다. 또한, 1조 원 이상(2조 원 미만) 기업과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기업에서 준수율이 13~14% 포인트씩 상승하였다. 작년까지 2조 원 미만 기업의 준수율이 20%를 밑돈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15개 지표 중 두 번째로 높은 개선율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준수율이 네 번째로 가장 낮은 항목에 머물러 있다. 주주 권리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아직 기업의 절반이 상법 준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인 미준수 사유로는 촉박한 결산 일정과 외부감사 일정이 주를 이루었는데, ERP 시스템 개선, AI 활용 및 디지털 전환, 회계 전문 인력 보강 필요성 등의 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상법⁵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 소집통지를 발송할 것을 요구한다. 소집통지에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⁶. 또한, 주주제안권을 가진 주주⁷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로 보아, 주주는 전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4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일 직전의 정기 주주총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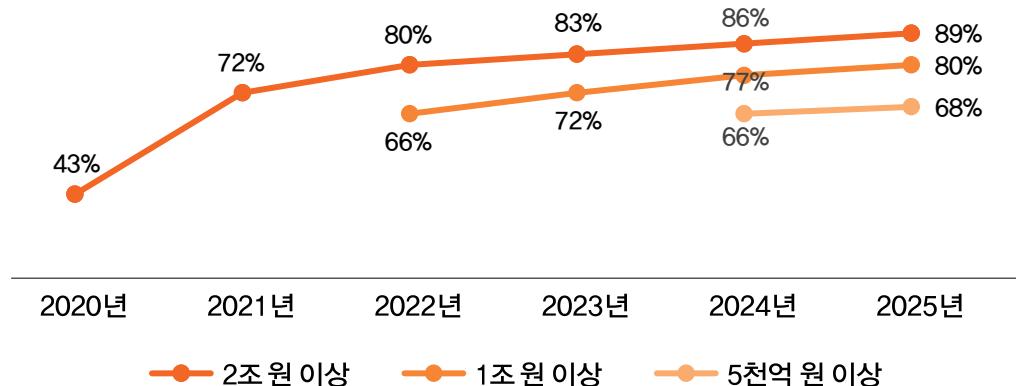
5 상법 제363조 제1항, 제542조의4 제1항

6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25.6.30. 시행) 〈별지 제58호 서식〉 : 주주총회소집공고

7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상법 제363조의 2). 상장기업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상법 제542조의 6 제2항)

2.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규모별 추세



동 지표는 올해도 준수율이 높은 항목 중 하나로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자산 규모별로 보면 작년 대비 준수율이 각 2~3% 포인트 정도 상승한 모습이다. 참고로, 12월 결산 상장기업 총 2,440개사(코스피 805개사, 코스닥 1,635개사) 중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전 전자투표를 실시한 비율은 61%(1,489개사)로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다⁸.

한편,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상장기업들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들에게는 병행 개최가 의무화된다⁹. 실시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쓸림 현상을 고려하면, 사전 전자투표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전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정관 개정¹⁰을 통해 감사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해야 하지만, 사전 전자투표의 경우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¹.

8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12월 결산 상장사 2025년 정기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 2025.0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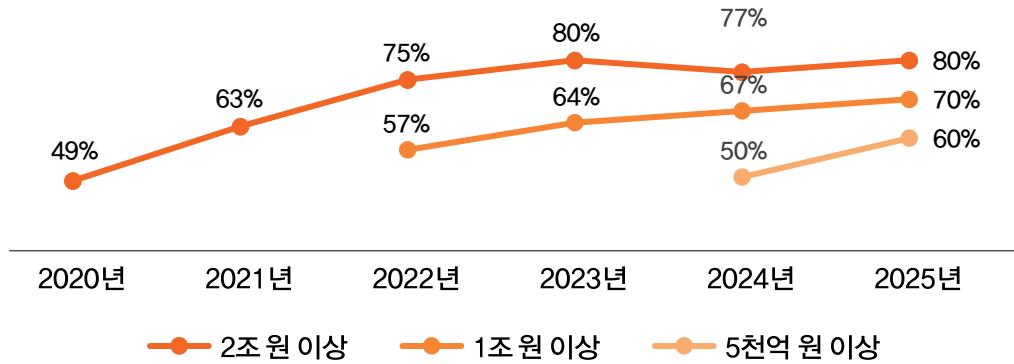
9 상법 제542조의14

10 법무부 법무과의 '감사 선임시 정관 개정 없이 상법에 따른 의사록 인증 가능 여부' 관련 답변('21.3)에 따르면, 상법 제409조 제3항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회사 정관에서 이보다 강화된 경의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회사 정관을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상법 제409조 제3항

3. 주주총회 집중일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규모별 추세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작년 소폭 감소했던 준수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1조 원 이상(2조 원 미만) 기업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준수율이 소폭 증가하였고,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기업은 10% 포인트의 증가를 보였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¹²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불가피하게 추가집중일에 개최한 경우¹³, 관련 세부원칙 및 동 지표를 준수한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 미준수로 표기했다는 기업도 일부 있었다.

한편, 12월 말 결산 전체 상장기업(총 2,440개사) 중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25년 주주총회를 집중 예상일 이외의 날에 개최한 기업은 총 957개사(코스피 409개사, 코스닥 548개사)로 전체의 39.3%에 그쳐 5천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¹⁴. 중소 규모 상장기업의 실무적 애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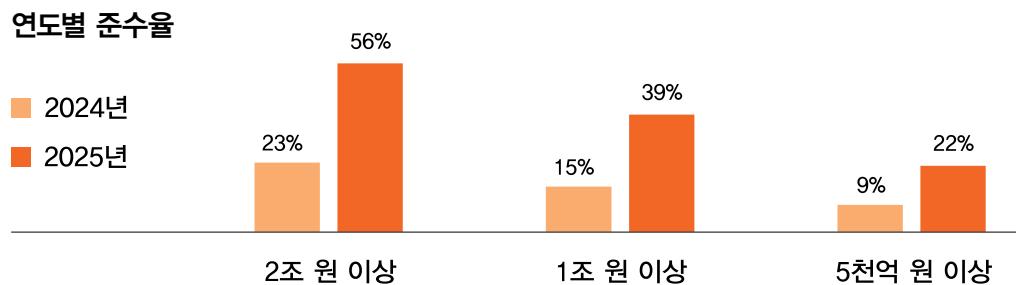
주주총회는 주주와의 가장 직접적인 소통 창구이자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주주총회일 분산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취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날짜와 더불어 시간의 분산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12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과거 주주총회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한 통계 분석을 통해 주주총회 집중일을 지정 및 공표한다.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한 회사가 집중 예상일을 제외한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사전 통보하고 실제로 그 통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거래소 인센티브(①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②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를 받는다. 반면, 참여 신청 회사가 집중 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신고의무 미이행 시 벌점 가중 가능)하여야 한다.

13 가이드라인은 ①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주주총회 분산개최가 인정되는 경우 및 ②추가집중일에 개최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사전 참여하여 주주총회 분산개최에 노력한 경우를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14 2025년 정기 주주총회가 가장 많았던 3일은 ①3월 5주차 수요일(544개사), ②3월 5주차 금요일(571개사), ③3월 6주차 월요일(512개사)로, 해당 3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기업이 전체의 66.7%를 차지하였다. 작년(7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주주총회 끌림 현상이 해소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했다.



동 지표는 작년에 신설되어 준수율이 저조한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15개 지표 중 가장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최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 뿐만 아니라 분기배당과 관련하여서도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도록 준수 요건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준수율이 전년 대비 25% 포인트 가량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 밸류업 프로그램,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¹⁵ 등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법정부 차원 노력의 결실로 풀이된다¹⁶.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하고, 배당금 확정일(배당액 공시일 포함)이 배당 기준일보다 앞서야 한다¹⁷.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내용이 정관에 반영되어 있다면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¹⁸에 따르면, 2025년 3월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125개사 중 54개사가 동 지표를 목표로 선정했다. 15개 지표 중 가장 선정 빈도가 높았는데, 그중 35개사(65%)는 올해 동 지표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 지표의 높은 선정률 및 계획 이행률을 통해, 밸류업 참여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현금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참고로,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을 실시한 코스피 상장기업 중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 이외로 정한 기업의 수가 전년 대비 2.66배 증가하였으며¹⁹,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 중 52.4%가 2023년부터 2025년 3월 사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²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해지며 동 지표의 준수율은 향후 지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년부터,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024.12.19.

16 정부는 2023년 2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배당기준일을 배당을 결의하는 주총일 이후로 지정할 수 있다.”는 상법상 배당기준일 관련 유권해석을 발표하였고, 분기배당도 결산배당과 같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를 반영한 표준정관을 마련하여 정관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 주주제안을 통한 배당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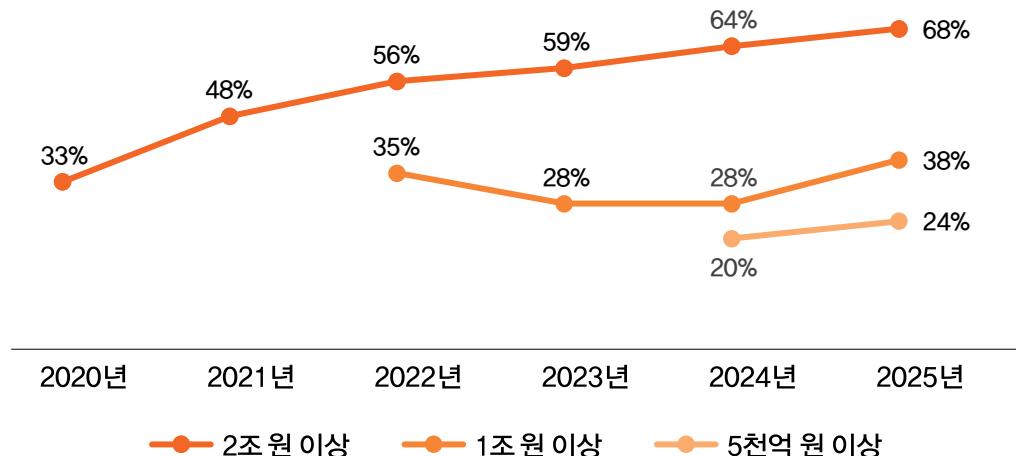
18 2025년 5월 발간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설문조사와 삼일PwC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 3월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도자료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최근 3년간(2022~2024) 배당실시 현황 및 주요 장기 추이 등’, 2025.05.12.

20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보도자료 ‘12월 결산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이행 현황’, 2025.04.03.

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였다.

규모별 추세



동 지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춤한 모습을 보이던 1조 원 이상(2조 원 미만) 기업의 준수율도 올해 크게 증가하였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은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에 이어 동 지표를 가장 많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표의 2조 원 이상 기업과 그 외 기업 간 준수율 차이는 37% 포인트로 15개 지표 중 세 번째로 크다. 미준수 사유로는 영업적자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배당 재원 부족이 주로 제시되었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기업들이 중장기적 관점의 배당정책²² 수립에 느끼는 부담을 짐작할 수 있다²³.

21 한국거래소, 기업 벤류업 프로그램 백서, 2025.0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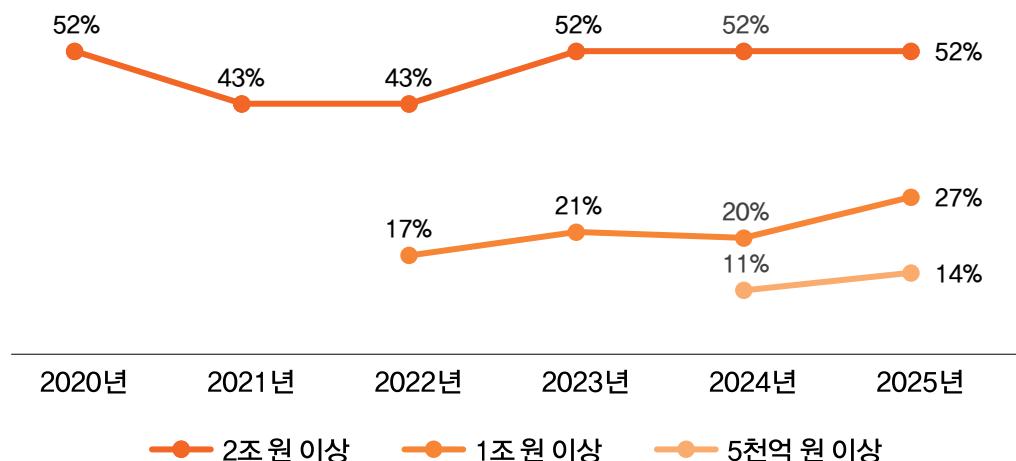
22 동 지표에서 배당정책은 기업이 배당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실행기준 및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배당규모를 정하는 기준 (예. 배당 성향), 장기적 배당계획(예. 2024년 배당 성향 XX%, 2025년 YY% 등으로 확대 예정), 배당형태(현금, 주식배당 등), 배당시기(중간, 결산 등)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당기의 배당실시에 관한 사항을 뜻하는 배당실시 계획과는 구분된다. 배당정책과 배당실시 계획의 통지는 공시, 주주 개별통지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IR, 홈페이지 게시 등 주주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23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의 2024년 결산현금배당 총액(우선주 포함)은 약 30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3% 증가했으며, 보통주 및 우선주 시가배당률은 각 3.28%, 3.91%를 기록했다.

이사회

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규모별 추세



2조 원 이상 기업은 3년째 정체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2조 원 미만 기업은 다소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1조 원 이상(2조 원 미만) 기업은 작년의 하락세를 상회해 회복하였고, 의무공시 2년 차인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기업도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며 2조 원 이상 기업과의 차이를 줄였지만,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미준수 사유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비상시 승계 프로세스는 운영 중이나, 명문화된 정책이 없다는 설명이 많았다.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승계정책 운영 주체, 후보(집단)의 구성 및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후보자 평가, 관리 및 교육, 외부 후보자 선발의 고려사항, 비상시 승계 대응 체계,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비상시 직무대행 순서 또는 승계 순서를 정하거나,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준수하는 등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기업의 소유 구조 및 의사결정 구조와 현재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려운 문제이며, 실무적으로도 생소하여 각 기업에 적합한 승계정책을 단기간에 수립 및 명문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최고경영자의 선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사회 중심의 승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사회 주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7.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규모별 추세



동 지표는 준수율이 높은 편이나, 모든 규모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이 ① 전사리스크관리, ② 준법경영, ③ 내부회계관리 및 ④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모두 명문화하여 실행하고 있는 경우에 내부통제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i) 전사적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인식 및 관리하기 위한 정책 마련 여부 및 운영 현황,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운영 현황, (iii)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및 운영 현황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보충 설명해야 한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거의²⁴ 모든 기업이 내부회계관리 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설계 및 운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준수 기업은 전사리스크관리 정책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준법경영 및 공시정보관리 정책 미비가 그 뒤를 이었다²⁵.

전사리스크관리 정책의 경우, 전사적 위험 인식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나 관련 조직(위원회 등)의 제시가 가능할 때에 인정되는데,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여 다루어야 한다. 참고로, PwC US의 2024 Global Investor Survey 보고서²⁶는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주요 위협으로 기술 변화, 정부 규제, 고객 선호도 변화, 공급망 불안정, 경쟁사 활동, 지정학적 요인, 인구 통계적 변화 및 기후 변화를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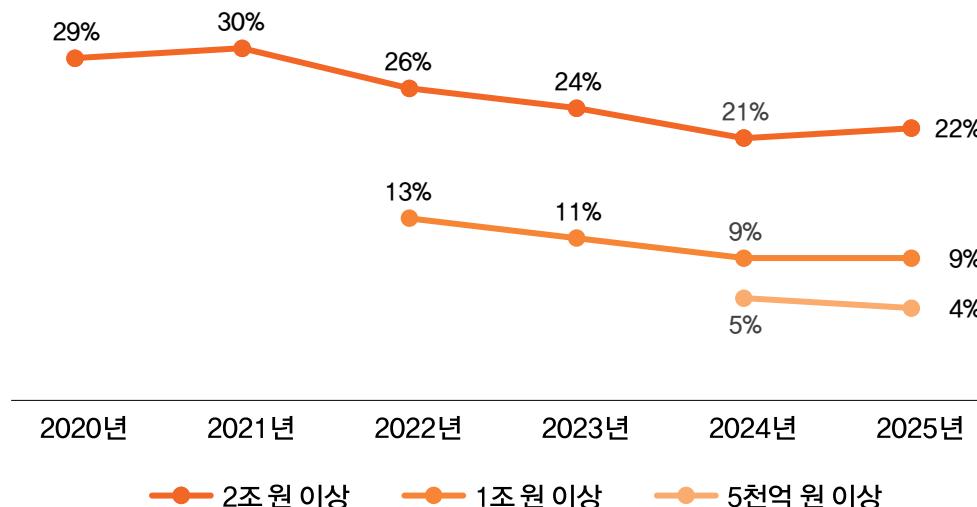
2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5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 외에도 위험관리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상장기업 관련 법규들이 있다. 예를 들어, 공시정보관리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2조 제2항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정하는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준법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26 2024년 12월, PwC US는 2024년 9월, 24개 국가 및 지역의 345명 투자자 및 분석가를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기대 및 미래 전망에 대해 설문 및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담은 Global Investor Survey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8.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규모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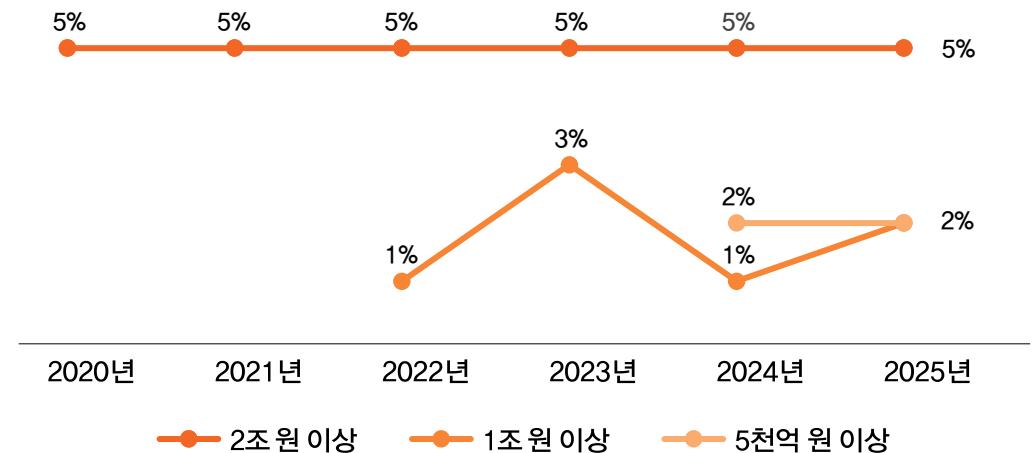
지난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여부’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로 보다 명확하게 변경되면서 준수율이 다소 감소했는데, 올해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거나, 그 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를 두어 의장 역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올해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기재한 기업은 10% 미만으로 극히 드물었다.

미준수 사유로는 대표이사의 회사 및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 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을 기재한 경우가 많았고, 상당수 기업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만 분리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상법 개정으로 향후 이사회 구성 및 문화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社会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사회 논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외이사의 의장직 수행이나 선임사외이사의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다.

9.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규모별 추세



동 지표는 규모와 관계없이 가장 준수율이 낮다. 많은 경우, 투기자본 세력 등이 이사회 및 기업 경영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미준수 사유를 제시했다. 집중투표제 채택 대신 소수주주 의견 청취를 비롯한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기재한 회사도 많았다.

상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²⁷. 다만,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²⁸, 현행 상법²⁹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³⁰.

집중투표를 도입할 경우 각 주주는 이사의 선임 결의에 관하여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³¹. 그리고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다³². 한편,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빠졌으나 후속 추진될 예정이므로 향후 개정 방향에 관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27 상법 제542조의 7 제2항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8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29 상법 제542조의7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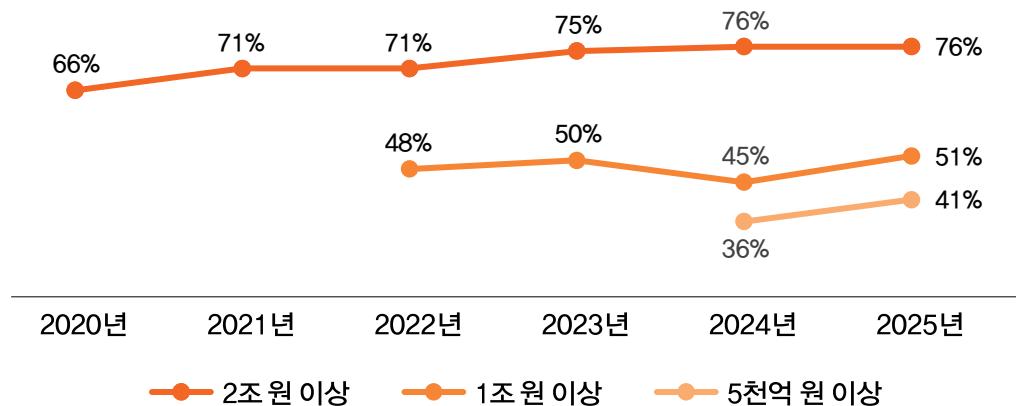
30 다만, 정관에서 3%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31 상법 제382조의2 제3항

32 상법 제382조의2 제4항

10.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규모별 추세



2조 원 이상 기업은 76% 수준에서 준수율이 정체된 모습이며, 1조 원 이상(2조 원 미만) 기업은 작년의 하락을 회복했지만 준수율은 여전히 절반을 겨우 넘기고 있다. 동 지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미준수 사유로는 임원 선임 시 적격성 검증을 위한 프로세스는 운영 중이나, 명문화된 정책이 없다는 설명이 많았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 지표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기준, 판단 주체(기구) 및 절차를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이다. 단순히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³³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현황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임원³⁴의 선임을 금지하는 명시적 기준 및 절차의 수립 여부가 중요하다.

33 공정거래법상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말한다.

34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다.

11.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니다.

연도별 준수율



2024년 신규로 추가된 동 지표의 준수율은 기업 규모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2조 원 이상 기업(80%)과 2조 원 미만 기업(30%) 간 준수율의 격차가 15개 지표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자본시장법³⁵ 등 법률에서 정한 임원 다양성 층족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2조 원 미만 기업의 준수율이 낮기 때문이다. 2조 원 이상 기업 중 미준수한 경우는 별도(개별)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 미만으로 자본시장법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가 대부분이었다³⁶.

여전히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법 규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³⁷,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4개사 중 1개사는 여성 이사를 선임하고 있어 자발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한편,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로 여성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회사들이 많았다. 이는 기업 내부에서 여성 임원 후보군을 발굴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데,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개선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35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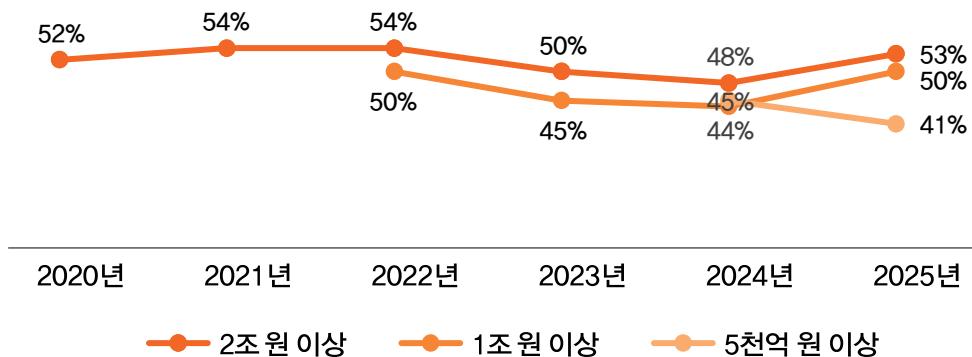
36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의무화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으로 결정된다.

37 현재 자본시장법상 성별 구성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별도의 제재는 없다. 그러나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 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반대 표결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2025.02)에 따르면,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 다수 성(性)에 해당하는 모든 이사 후보에 대하여 반대하며, 추후에는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감사기구

12.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³⁸)를 설치하고 있다.

규모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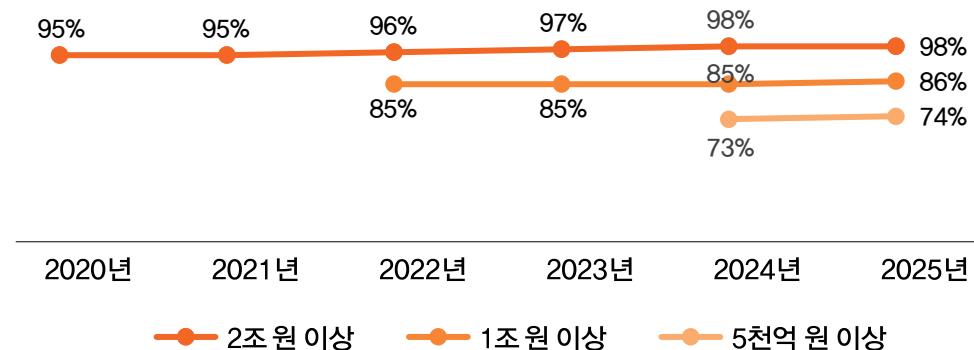
1조 원 이상 기업은 작년 다소 감소했던 준수율을 상회해 회복한 반면,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기업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동 지표는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를 설치하고, 더불어 그들을 보좌하여 내부감사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독립성 조건의 층족을 위해서는, 내부감사부서의 인사 조치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있거나, 최소한 내부감사부서의 임면 및 평가에 대한 동의권이 내부감사기구에 있어야 한다.

미준수 사유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대부분 전담 부서는 있으나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지 않고 경영지원실 소속 등 조직 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거나, 인사 관련 의사결정에 감사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절차(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경우였다. 반면, 2조 원 미만 기업의 경우, 전담 부서가 없고 다른 업무 부서(법무, 회계, 전략기획 등)에 소속된 직원 중 지정된 직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준수율 개선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³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란, 명칭을 불문하고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며, 경영진단 등을 수행하는 부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한다.

규모별 추세



동 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준수율이 가장 높은 순위 2위에 올랐다. 최소 1인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두도록 하는 상법 규정으로 인해 2조 원 이상 기업은 대부분³⁹ 준수하고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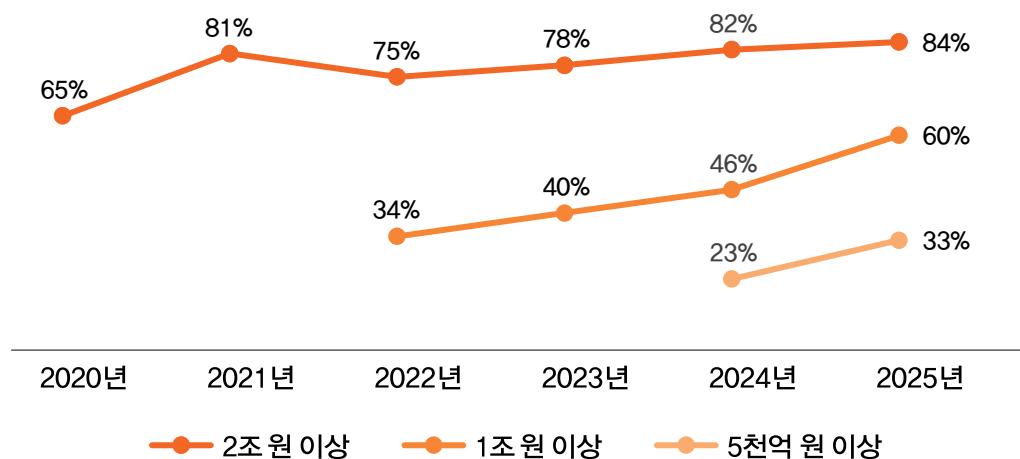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⁴⁰. 반면, 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성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 또는 재무 전문성은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수행에 필수적이므로 법규 준수 차원이 아니라 역할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강될 필요가 있다.

39 별도(개별) 기준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으로 감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40 자산 2조 원 미만 1천억 원 이상 상장기업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이 적용된다.

1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였다⁴¹.

규모별 추세



1조 원 이상(2조 원 미만) 기업의 준수율 향상이 두드러졌으나, 2조 원 이상 기업과 2조 원 미만 기업 간 준수율이 39% 포인트로 매우 크다.

내부감사기구는 직접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업무를 토대로 상법상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게 되므로 외부감사인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가 중요함에도, 바람직한 관행이 아직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미준수 사유는 회의의 비정기적 개최, 서면 보고만 진행, 경영진 참석 하에 진행 등으로 다양했다.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분기별 1회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품질이 향상된다⁴². 따라서 동 지표의 개선은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갖는 회의는 기업의 문화, 재무보고 이슈, 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실무적으로 공식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직후에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기업은 사전에 감사위원회 회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과 일정을 논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41 '분기별 1회 이상'은 1년에 4번이 아니라 각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을 의미한다. 또한, 동 회의는 대면 또는 화상 회의만 해당되며, 내부감사기구의 감독 대상이 되는 임직원은 참석할 수 없다.

42 이중현, 김민희, 전규안. (2024).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66(1), 1-32.

1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규모별 추세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모든 기업이 준수하였으며, 2조 원 미만 기업의 준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분석 대상 기업들의 내부감사기구가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 등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내부규범에 정보 접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은 감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지표가 보다 의미 있는 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의 구비보다는 내부감사기구의 관점에서 유용성 여부가 드러날 수 있는 기준이 부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맺음말

다음을 위한 설계

이사의 주주 충실험의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3%를 적용,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명칭 사용 및 비율 강화 등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빠졌지만, 함께 논의되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이어서 추진될 예정으로, 2025년은 모든 기업들에게 기업지배구조를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부터 시작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가치 제고에 있어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가 활용된 사례도 많았다⁴³. 향후 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별 선정 빈도

구분	핵심지표 항목	선정 기업 수 (중복 집계)	(공동) 선정 순위
주주	①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7	5
	②전자투표 실시	5	6
	③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10	3
	④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54	1
	⑤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18	2
이사회	⑥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5	6
	⑦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1	10
	⑧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7	5
	⑨집중투표제 채택	2	9
	⑩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8	4
감사 기구	⑪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3	8
	⑫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7	5
	⑬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4	7
	⑭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5	6
	⑮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1	10

주) 핵심지표 준수율 향상을 목표로 한 66개사 중 2개사는 핵심지표 추가 준수 목표 항목 수 또는 목표 준수율만 공시하여 해당하는 지표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상기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

43 15개 핵심지표 중 선정빈도가 높은 상위 지표 3개는 순위 순서대로 '④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⑥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및 '③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였으며, 각 54개사, 18개사, 10개사(선정기업 수 중복 집계)가 선정하였다. 해당 3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항목별 선정기업 수가 10개 미만으로 사실상 밸류업 참여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집중 개선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사는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공시를 위한 공시’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2025년은 개정 상법의 시행과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전환점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기업들은 단기적인 규제 대응을 넘어, 지배구조를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지배구조 최적화를 위한 내비게이터’로 삼아, 내부 정책과 절차,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사회와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 핵심지표 기반의 내부 점검 체계 구축, 공시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시스템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

한국거래소는 20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2025년 중점점검 대상은 모두 10개 항목이며, 이 중 4개는 핵심지표이다.

‘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10개 항목)

구분	개수	중점점검사항
핵심지표	4개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⑯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세부원칙	5개	1–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2–③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정책 마련 3–③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9–①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 10–②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기타사항	1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출처: 한국거래소, 25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사전 예고, 2025. 2. 14

거래소는 예고한 중점점검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8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11월까지 지배구조 현황을 충실히하고 투명하게 기재한 상장기업을 공시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별첨

2025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의무공시]

구분	핵심지표	전체	2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1조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39%	49%	33%	28%
	② 전자투표 실시	81%	89%	80%	68%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72%	80%	70%	60%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42%	56%	39%	22%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47%	68%	38%	24%
이사회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35%	52%	27%	14%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76%	91%	70%	59%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14%	22%	9%	4%
	⑨ 집중투표제 채택	3%	5%	2%	2%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59%	76%	51%	41%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53%	80%	33%	28%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49%	53%	50%	41%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88%	98%	86%	74%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63%	84%	60%	33%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8%	100%	99%	95%
총 준수율		55%	67%	50%	40%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8W-RP-087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sgc.samil.com